

영등포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7.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1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정의 및 범위확대 (안 제2조)

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시책추진, 전담기구와 공무원 구성 등 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지원의 범위 구체화 (안 제4조)

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5조)

- 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안 제7조)
- 사.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 표창수여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 부터 2011. 4. 30일 통보된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 인지(認知)와 귀화(歸化)에 따른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함.
- 안 제3조에 구의 책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실태 파악, 전담 공무원 및 기구 설치 등 시책추진과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하여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함.
-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 토록하고 협의회는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대체 운영토록 함.
- 안 제7조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3년 동안(재지정 가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에 시행일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1. 10. 5일부터로 함.
- 최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와 귀화(歸化)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용자의 단기적 편익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편향되지 않고 각 부서간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함.

-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 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 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